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 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토면적은 38만 km²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해양영유권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km²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영토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학계의 인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 자료의 하나인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영유권 갈등의 행위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현상을 변경하려고한 도전국가의 입장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일본에 대해 도전국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폭이 적은 중국을 차순위 협력대상자로 고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1국가 1원칙의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기존연구의 고찰
3. 자료의 소개와 방법론
4. 분석과 논의
 - 가. 중국
 - 나. 일본
 - 다. 러시아
 - 라. 한국
5. 결론

1. 들어가는 말

- 일본은 독도에 대해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 러일전쟁 이후 1905년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주장,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1항을 애매하게 만들어 아전인수식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독도문제가 조약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
 -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지속적인 망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전략적 갈등유발로 판단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 전략으로 일관
 - 조용한 외교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된 1965년 한일어업조약의 기본조약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의 독도소유권을 인정한 독도밀약을 제외하더라도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의 빌미를 제공
 -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
 -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
 - 이러한 조치는 협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를 어업부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독도문제에 있어서 진전 없음.
-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독도에 대한 강제관할권을 배제한다는 선언을 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포하였지만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국제법적 논거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강화
 - 일본의 해양영토에 대한 공세적 입장의 이유는 일본의 국토면적은 38만 km²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km²로 증가되어 세계 9위의 대국이 됨.
 -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는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자세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여론의 반응에 의존하여 일본이 도발하면 반응하는 지속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대중요법식의 대응으로 일관
- 이어도의 관할권에 있어서 중국은 자국령 최동단 퉁다오에서 247km 그리고 우리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를 염두에 두

고 인구나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야한다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한중 간의 신경전이 고조됨.

- 우리의 고유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을 분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학문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에 산재해왔던 영토분쟁에 대해서 주요국가의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략적으로 유효한 대책수립의 출발점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학계가 세계의 영토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찰할 기회를 가지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설명을 통해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영토 및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기존연구의 고찰

- 우리나라에서 영유권 또는 영토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를 일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구분
 - 한국의 연구는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문제에 집중(김영수 2008; 최병학 2010)
 - 동아시아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도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 (김태준 2008; 최희식 2010)에 대한 개별사례 분석이나 유사 사례를 다수 포함하는 비교연구
 - 소수의 연구가 동아시아를 벗어난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분쟁(이극관 2011; 배진수 2012)을 소개
 - 독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주제로 부상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연구의 접근법은 역사·지리적 접근과 국제법적 접근의 두 가지로 분류
 - 두 가지 접근법은 일견 다른 접근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본질적으로 유사한 접근
 - 일본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역사서의 기록과 고지도에 명기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 일본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반박
 - 이러한 접근법에 의한 연구 결과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본의 망언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기초연구¹⁾

우리의 고유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을 분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학문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접근에
말려들지 않고 일본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대응과 동일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한국이 제작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와 위치의 오류 등을 문제 삼아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
 - 한국의 각종 지리서나 역사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의 혼돈 가능성과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반론을 제시(정갑용 주문배 2004, 36-39)
 - 독도를 둘러싼 한일의 상호대응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순환 논리에 빠져 갈등을 증폭하며 각종 지리서나 역사자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논리는 상대방 편찬한 관찬지도에 독도에 대한 표시나 표기가 누락되거나 틀린 표시를 하고 있음에 예로 들어 상대방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
-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접근에 말려들지 않고 일본에 맞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한국 학계가 주도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이 역사학에 기초
 -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국제법적 권원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배경에 있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고지도와 고문서 연구
- 국제정치의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영토주권을 인정받고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실효적 지배
 - 국제법이라는 일반법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둘러싼 양국의 역사적 논쟁보다는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 확립을 보장하는 데 더 효과적
 -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법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영유권의 확보와 인정은 현실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힘의 정치를 국제법이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정치의 문제
 -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학적 접근이나 국제법적 접근과 동시에 국제정치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과 관련된 영유권 분쟁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실증적이며 고증적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전개와 현실에 대해서 고

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 본 연구는 지난 100년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영유권 문제에 관련하여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자료를 분석하고 간략한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처해있는 정책적 위치를 고찰

3. 자료의 소개와 방법론

-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
 - 현대적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충돌로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9년부터 1995년까지 75년간에 걸친 기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영토관련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건데이터 형식으로 수집
 - 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영토관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challenger state)가 상대국가(target state)에 대해 의사 표명 시점
 - 정확한 분석의 단위는 도전국가와 상대국가의 특정된 방향성을 고려한 양자관계(directed dyadic relationship)
 - 양자관계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영토의 현상유지에 변경을 의도하는 도전국가가 상대국가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외교 정책 행위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
-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아래의 규칙에 근거하였음.
 - 도전국가의 행위는 3가지의 선택으로 분류되는데 (1)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2)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3) 군사적 행위를 시작하는 경우
 - 도전국가가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와 군사적 행위를 시작하는 경우는 언제 해당 행위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 없이 정확함.
 - 문제는 도전국가가 영토적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선택을 의미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자료를 작성할 때 “12개월 원칙”을 적용
 - 직전의 협상이나 군사적 행위가 종료되고 12개월이 지나는 동안 후속 조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도전국가가 영토의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로 데이터를 작성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

**현대적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충돌로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19년부터
1995년까지 75년간에
걸친 기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영토관련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건데이터 형식으로
수집**

영유권 갈등 데이터는 전체 6,572건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도전국가가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가 4,370회(66%)이고, 협상을 시작한 경우가 1,782회(27%), 그리고 군사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가 390회(6%)

- “12개월 원칙”은 도전국가가 협상이나 군사적 행위를 개시할 때까지 계속 적용

- 현상유지 데이터는 월별자료로 작성되었지만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정부의 형태, 정부의 동맹관계, 국내정치 및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는 월별로 작성되기 어렵고 실제로 연도별 자료들이 많다는 점이 한계임.
- 본 연구논문에서는 전체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당사자 국가들인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제외하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포함.
- Huth and Allee 데이터가 한일 간의 영유권 갈등에 있어서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자료조사 과정에 오류
-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도전국가이거나 상대국가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분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표본으로 포함된 4개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더욱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

4. 분석과 논의

- Huth and Allee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일반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유권 갈등 데이터는 전체 6,572건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도전국가가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가 4,370회(66%)이고, 협상을 시작한 경우가 1,782회(27%), 그리고 군사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가 390회(6%)
- 자료가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군사적 분쟁의 발생은 실제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구체적 협상을 전개하는 경우도 소수임.
- 영유권과 관련한 갈등은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문제제기에 그치고 상대방의 반응도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가. 중국

- 중국은 고대부터 주변국과 많은 전쟁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사용해왔다고 할 정도로 국력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주변의 비대칭적인 국가나 세력을 무력수단을 통해 복속시킴으로써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형성(서상문 2013, 15)

- 중국은 1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경분쟁을 경험해 왔고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나름의 노하우도 축적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60년의 기간 동안 군수지원과 군사지원을 포함하면 실제 교전행위는 총 15회, 분쟁까지 포함하면 총 23회의 영토분쟁과 분쟁해결의 과정을 경험(이동올 외 2008, 11)
- 중국정부는 러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과 국경 분쟁을 치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

○ 중국이 도전국가로서 발생한 분쟁은 전체 19건이 발생

- 일부 갈등은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국가와 상호관계로 인해 동일한 분쟁을 2개의 국가가 시차를 두고 당사국으로 조사됨.
- 중국이 영국에 대해서 제기한 영유권 문제를 인도가 승계하는 경우 또는 프랑스에 대해서 발생한 영유권 문제가 나중에 월남, 그리고 월남 패망 이후에는 월맹으로 이어져 분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
- 중국은 러시아와 4,37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전체 국경의 97% 지역에서 국경을 획정하였지만 헤이샤쯔다오와 아파가이투주 등 일부 지역에서 국경을 획정하지 못함.
- 인도와는 2,0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분쟁지역은 12만 5천km²에 달하고 베트남과는 영토와 영해 그리고 남사군도에서 분쟁상태(경향신문 2004년 8월 13일)
- 중국이 도전국가로 전개되는 전체 19건의 분쟁 중에서 1995년 기준으로 부탄, 베트남, 일본,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을 포함하여 전체 6곳이 분쟁 상태
- 군사적으로 치열한 갈등을 유발한 사례는 베트남지역의 국경분쟁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기부터 지속되어 1932년부터 1995년까지 63년의 기간 동안 10회의 협상과 10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
-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1919년부터 1962년까지 5회의 협상과 7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
-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1919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분쟁의 상당 부분이 초기에는 군사적 충돌을 경험하였고 31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평화로운 형태의 타결이 결실을 맺음.
- 중국의 영토갈등 패턴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우, 식민지 종주국과 분쟁을 시작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1960년대 그리고 늦어도 1980년대까지 갈등이 해결됨.

**중국의 영토갈등
패턴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우,
식민지 종주국과
분쟁을 시작하여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1960년대 그리고
늦어도 1980년대까지
갈등이 해결됨**

〈표 1〉 중국이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국가들과는 1993년 4월을 시점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소

번호	상대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07	아프가니스탄	1919/1	1963/3	45	3	-
108	부탄	1979/1	1995/8	20	9	-
109	영국	1919/1	1930/2	12	5	-
110	영국	1919/1	1984/1	65	6	-
111	영국/인도	1919/1	1962/4	48	5	7
112	영국/미얀마	1919/5	1960/1	44	15	5
113	프랑스	1919/1	1945/3	28	2	-
114	프랑스/월남/월맹	1932/6	1995/12	70	10	10
115	일본	1919/1	1945/11	31	2	6
116	일본	1951/1	1995/7	46	4	-
117	네팔	1949/1	1960/12	13	3	1
118	카자흐스탄	1993/4	1994/2	2	2	-
119	키르기스스탄	1993/4	1995/12	4	3	-
120	몽고(몽골)	1946/1	1962/11	18	1	2
121	파키스탄	1947/1	1962/2	16	1	-
122	포르투갈	1919/1	1975/6	57	3	1
123	소련(러시아)	1919/7	1995/12	81	31	4
124	소련	1948/3	1955/10	10	3	-
125	타지키스탄	1993/4	1995/12	4	2	1

-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국가들과는 1993년 4월을 시점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소

〈표 2〉 중국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27	프랑스/월남/월맹	1932/6	1995/5	62	13	1
129	인도	1963/4	1995/9	40	15	-
138	일본	1932/10	1937/7	9	2	7
144	말레이시아	1979/1	1995/11	19	5	-
152	네팔	1949/1	1960/12	13	3	-
154	필리핀	1971/1	1995/12	27	5	-

-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영유권 갈등의 특징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들 또는 식민지 시대에 해당지역을 점유했던 식민지 중주국과의 갈등에 국한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 갈등
- 중국이 분쟁의 상대국가인 사례는 전체 6개가 보고되었고 일본과의 만주국 사례 그리고 네팔과의 국경 분쟁을 제외하면 월남,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현재에도 분쟁상태
 - 중국이 도전국가인 경우와 비교하면 중국에 대해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음.
 - 만주국과 관련한 중일 간의 분쟁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감행한 국가는 1959년 2월의 베트남이 유일한 사례
 -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경분쟁으로 일어난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1979년 2월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는 중국이 주도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국경 및 영유권 분쟁에 있는 주변국가 중 누구도 군사적 수단에 의지하는 선택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 영유권 갈등을 경험하는 국가들 사이에 도전국가의 국력이 현격하게 낮은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보다는 협상에 의존
 - 도전국가의 국력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개연성이 증가
- 중국의 영유권 관련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근대 이후 가장 빈번하게 협상행위와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유권에 대하여 활발하게 압력과 교섭행위를 적용
 - 전통적인 의미에서 중국은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과 군사적 충돌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적극적이며 도발적인 행위양식을 보여줌.
 - 중국이 상대국가인 경우보다 도전국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국경을 대치하던 베트남(프랑스)과 인도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통해 영유권 확보
 - 이에 반해 소련(러시아)과는 군사적 도발보다는 협상을 주된 정책으로 활용하여 영유권 문제에 대응
 - 상대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변화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도발적인 행위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냉전기와 탈냉전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남.

**중국의 영유권 관련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근대
이후 가장 빈번하게
협상행위와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유권에 대하여
활발하게 압력과
교섭행위를 적용**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해양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는 현대적
개념의 영토와 영유권
개념이 형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양영토의 확장과
관련하여 전개**

나. 일본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Huth and Allee 데이터는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지정하는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분석
 - 오류의 원인으로는 일본의 외교적 노력도 있지만 일본의 영유권 문제 제기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민간은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로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과격하게 반응한 경향이 오해를 일으킨 경향이 있음.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단순한 표명에 대한 한국의 과격한 반응은 한일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없는 서양학자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한국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인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유발
-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해양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는 현대적 개념의 영토와 영유권 개념이 형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양영토의 확장과 관련하여 전개
 - 일본이 도전국가로 영유권 분쟁을 유발한 사례는 전체 7건의 사례가 조사되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패망하기 이전에 식민지 확장과정에 발생한 분쟁사례들이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 아래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은 한국과의 독도 그리고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으로 두 사례가 있음.
 - 러시아와의 쿠릴열도에 대한 분쟁은 종전 이후 일본이 국가체제를 정비한 195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군사적 대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29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전개
-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러시아의 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종전 이후인 195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협상은 2회에 불과한 반면 군사적 대결이 3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소련)에 대한 대응과 차이가 있음.
 - 일본은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냉전시기 군사적 강대국이었던 소련에 대해서 군사적 행위의 선택을 배제하고 협상에 주력
 - 국력이 열세에 있었던 한국에 대해서는 협상이 2회인 반면 군사적 행위를 3회에 걸쳐서 선택
 - 쿠릴열도와 독도 모두 상대국인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상국가이며 일본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일본의 접근은 다름.

〈표 3〉 일본이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상대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57	한국	1951/1	1995/6	47	2	3
138	중국	1932/10	1937/7	9	2	7
139	프랑스	1938/10	1938/10	1	-	1
140	프랑스	1941/6	1941/6	1	-	1
141	몽고(몽골)	1935/6	1940/1	5	1	2
142	소련	1935/6	1944/10	11	3	-
143	소련(러시아)	1951/1	1995/10	50	29	-

- 일본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은 역사적으로 모두 4건의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 프랑스 및 미국과의 영유권 분쟁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종결
 - 일본이 상대국가로 현재 진행 중인 영유권 분쟁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과의 사례
 -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대만의 부속도서로 강제로 할양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면 일본은 1895년 무인도를 선점하여 정식으로 편입하였다고 주장
 - 1895년 일본이 점유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까지 센카쿠 지역에 대한 영토갈등이 존재했는데 당시에는 협상이 6차례 그리고 군사적 행위가 2차례 발생

〈표 4〉 일본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15	중국	1919/1	1945/11	31	6	2
116	중국	1951/1	1995/7	46	4	-
126	프랑스	1939/1	1940/1	2	-	1
162	미국	1919/5	1920/11	3	2	-

-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일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분석의 대상기간인 1995년까지는 협상만 4차례 있었을 뿐이고 군사적 충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
 - 최근에 들어와서 센카쿠열도에서 중일 간의 갈등이 외교적 대립에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중국의 부상에 있음.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일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분석의 대상기간인 1995년까지는 협상만 4차례 있었을 뿐이고 군사적 충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

**전후에도 1950년에
압력과 협상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왔지만 이후
대부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상대방이 되는 사례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일본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인 경우는
러시아와의 북방도서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

- 2010년 일본이 중국의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 당국은 관광교류의 중단, 희토류수출 중단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했고 일본이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한 사례에서처럼 중국의 대응 수위가 강경해짐.
 -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 (손기섭 2007, 449), 중국이 1990년대 전반 덩샤오핑 시절에는 ‘차세대 해결론’을 통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일본에게 외교적 항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개발을 시도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여 이른바 ‘전략적 호혜관계’에 합의하고 ‘힘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
 - 2012년 8월 일본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센카쿠에 상륙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
 - 홍콩의 시위대가 센카쿠 열도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시위를 벌이는 등 민족감정의 문제로 비쳐졌지만 사실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447만 km²로 영토면적의 25배 더 큰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387만 km²인 점과 비교할 때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이 해양영토라는 개념이 없던 19세기 말부터 무인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는 팽창적인 정책을 전개하여(조선일보 2012년 5월 1일) 동아시아에서 해양을 지배하는 전략을 추진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핵심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과 중국의 도전선 확대라는 팽창전략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연근해중심에서 대양중심으로 해양방위전략을 전환
 - 미국의 일본-한국-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중국의 공세적 해상정책의 핵심 원인
- 일본의 영유권 관련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근대 이후 일본은 전략적인 움직임을 해왔음.
- 조사대상이 된 1932년 말부터 1945년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영유권 문제에 관한한 협상행위와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압력과 협상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영유권을 확보
 - 전후에도 1950년에 압력과 협상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왔지만 이후 대부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상대방이 되는 사례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일본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인 경우는 러시아와의 북방도서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
 - 일본의 대응은 군사적 갈등은 회피하고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전환

- 일본의 전략적 전환은 영토문제를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강화하려는 의지
 -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조치도 일면 현상유지를 포기하는 강경한 조치로 보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과격한 대응을 선택
 - 일본의 입장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과격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영유권 문제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도발
 - 중국의 과격한 대응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거나 일본의 군비강화와 보통국가화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빌미로 활용

-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여 과격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이슈로 만들어 자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
 - 센카쿠와 독도에서 일본은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변경의 다른 입장에 있지만 상대방의 도발을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일관된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용

다. 러시아

-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영토 및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했지만 주변국가와의 영토문제에서 러시아가 현상을 변경하고자 했던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거의 정리
 -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경우는 대부분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국한되어 있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극동지역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체감하는 영토문제의 갈등은 아주 낮음.

-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영토문제로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
 - 구한말 조선에 속했던 영토이나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령으로 전환되면서 녹둔도는 러시아 영토로 편입
 - 녹둔도를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조약을 통해서 러시아 영토로 확인
 -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중소국경분쟁이 1960년대에 발생했지만 1991년 5월 중소국경협정으로 대부분의 영토문제는 해결

- 러시아의 영유권 갈등의 대표적인 특징은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사례와 상대국가인 사례가 동등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영토 및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했지만
주변국가와의
영토문제에서
러시아가 현상을
변경하고자 했던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거의 정리*

최근에 지속되는 영토문제는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같은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 다시 말해 구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들과의 제한적인 갈등

-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의 빈도는 유사하지만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은 유럽, 발칸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었고 극동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음.
 -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경우, 영유권 분쟁은 유럽, 발칸, 중앙아시아 외에 동아시아에서도 발생
 -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사례에서나 대상국가인 사례에서나 협상과 더불어 군사적 분쟁에 못지않게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함.
- 최근에 지속되는 영토문제는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같은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 다시 말해 구소련연방의 일원이었던 국가들과의 제한적인 갈등
- 러시아 영토분쟁의 특징은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종결되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결정됨.
 - 폴란드의 경우 협상보다 군사적 충돌이 많았고, 핀란드의 경우는 협상과 군사적 수단이 각각 2회로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그루지야의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
-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니콜라이 1세 시대부터 흑해와 지중해 방면으로 진출해 농산물을 반출하는 통로와 19세기 후반부터 공산품의 해외 판로를 위한 통로의 확보가 주요 목적

〈표 5〉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상대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233	우크라이나	1992/4	1995/1	4	4	-
236	핀란드	1919/10	1920/5	2	2	-
237	폴란드	1919/2	1921/1	3	1	2
238	루마니아	1920/10	1940/6	21	3	1
239	루마니아	1941/1	1943/12	3	-	1
240	에스토니아	1939/3	1940/6	2	-	2
241	핀란드	1938/4	1940/9	4	2	2
242	라트비아	1939/9	1940/6	2	-	2
243	리투아니아	1939/10	1940/5	2	-	2
321	아제르바이잔	1994/2	1995/7	3	2	-
322	그루지야	1993/1	1995/12	4	2	1
333	그루지야	1920/6	1921/2	2	-	2
334	이란	1919/1	1957/4	38	7	-
335	터키(오토만제국)	1945/6	1953/5	10	1	2

- 크림전쟁을 통해 진출을 기도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저지당했고 이후 러시아는 2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남진정책을 추구
 - 러시아의 남진정책의 그림자로 오스만 투르크가 15세기 이래 지배해오던 발칸지역에 복잡한 국제 분쟁이 발생
 - 러시아가 도전국가인 발칸지역의 영토분쟁은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일단락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영유권 분쟁은 독립국가연합에 국한
-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의 경우 근동, 중앙아시아, 유럽에 분포하는 분쟁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하여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95년까지 지속되는 갈등은 중국과의 국경분쟁과 일본과의 북방도서 문제가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1969년 우수리 강에서 누적된 군사적 충돌이 국경전쟁으로 발전하는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었지만(서상문 2013, 494-495), 탈냉전이 본격화된 1991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에 중점을 두면서 러·중 국경확정에 합의
 - 2001년에 양국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2004년에는 “동부 국경에 대한 추가 협의문”을 타결함으로써 러·중 간에는 국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 합의

〈표 6〉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03	아프가니스탄	1919/10	1946/1	29	10	1
123	중국	1919/7	1995/12	81	31	4
124	중국	1948/3	1995/10	10	3	-
142	일본	1935/6	1944/10	11	3	-
143	일본	1951/1	1995/10	50	29	-
185	에스토니아	1992/5	1995/8	3	3	-
186	핀란드	1919/5	1919/5	1	-	1
197	핀란드	1941/7	1946/8	3	1	1
218	라트비아	1994/1	1995/1	2	-	-
228	폴란드	1919/2	1921/1	3	1	2
231	루마니아	1919/3	1920/11	4	2	-
294	이란	1919/1	1957/4	32	7	-
341	터키(오토만제국)	1921/1	1921/1	1	1	-
345	터키(오토만제국)	1921/3	1921/3	1	-	1

러시아가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의 경우 근동, 중앙아시아, 유럽에 분포하는 분쟁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하여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95년까지 지속되는 갈등은 중국과의 국경분쟁과 일본과의 북방도서 문제가 있음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1951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총 47회의
영토분쟁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었는데,
일관되게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설정하는
사실관계의 착오 발견**

-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과의 쿠릴열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본질적으로 외교적 문제로 남아 있음.

- 북방도서에 대한 분쟁은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강점했다가 2차 대전 패배로 러시아가 재점유한 북쪽 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등 4개 섬에 대해 일본이 돌려줄 것을 요구
 - 러시아는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 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면서 러시아가 반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 전개
 - 협상과정에서 러시아의 단계적 반환에 대하여 일본의 동시 반환이 충돌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러시아는 입장을 선회하여 반환계획 자체를 폐기
 - 현재까지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아투루프 섬을 제외한 나머지 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분쟁은 지속
-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행위패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보면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 빈도는 낮지만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는 행위 유형은 협상과 군사적 갈등행위를 교차하여 사용하면서 문제를 처리
 - 러시아와 중국의 유사한 행위 패턴은 강대국으로서 주변의 약소국과의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전략
 -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 정치지도자의 일방적인 타협, 영토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원칙의 적용, 그리고 정치적 합의에 의한 영토문제의 해결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윤태룡 2012).

라. 한국

- 한국이 관련된 영유권 분쟁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관련 자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
 -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1951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총 47회의 영토분쟁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었는데, 일관되게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설정하는 사실관계의 착오 발견
 - 본 연구에 이용된 Huth and Allee의 자료가 영유권 분쟁에 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영토갈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 왜곡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한일관계에서 한국을 도전국가로 일본을 상대국가로 표시한 것을 일본을 도전국가로 그리고 한국을 상대국가로 수정하여 협상과 군사적 충돌의 패턴을 표시

〈표 7〉 한국이 상대국가인 영유권 분쟁

번호	도전국가	시점	종점	빈도	협상	군사
146	북한	1948/1	1995/4	53	20	7
157	일본	1951/1	1995/6	47	2	3

-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착오를 제외하면 한국이 상대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요구하는 도전국의 지위를 가지는 사례는 전무
 - 한국과 일본 사이의 47회의 영토분쟁 중에서 협상으로 귀결된 사례가 2회로 1952년 1월과 1965년 1월로 조사
 - 1952년은 한국전쟁 중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이 있었고 1965년은 한일어업조약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음.
 - 조사기간 중 발생한 군사적 분쟁행위로 귀결된 사례는 1953년 6월, 1954년 6월, 그리고 1978년 5월의 3회로 나타남.

- 한국을 대상국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남북한 간의 영유권분쟁으로 1948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 53회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 북한이 도전국가로 남한을 상대국가로 표시
 - 남북관계에서 협상으로 귀결된 사례는 22회, 그리고 군사적 행위로 귀결된 사례는 10회로 조사
 -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NLL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발생되었던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

-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는 1995년 한국이 태풍·해일 등 해양 및 기상 현상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시작
 - Huth and Allee의 자료에는 이어도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어도는 기준 수면에서 4.6미터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라는 점에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님.
 -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해양 관할권 분쟁의 잠재적 이슈로 등장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놓고 분쟁의 조짐이 증가
 - 한국이 주변국가에 대하여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없다는 점은 주변국과의 영유권 문제를 처리하는 전략에 반영되어야 함.
 - 이어도 문제가 안고 있는 분쟁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 차원에서도 중국이 공세적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는 1995년 한국이 태풍·해일 등 해양 및 기상 현상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시작

**우리 국민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전략적 움직임에
우리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함**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더욱 신중한 입장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대안이 필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NLL에 관련한 분명한 의지가 요구됨.

5. 결론

- 우리 국민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전략적 움직임에 우리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함.
 -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일본은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일축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도 사실은 국제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제법을 이용한 정치적 및 전략적 접근
 -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에 동의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제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적 접근을 거부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의 선택
- 본 연구의 목표는 독도문제의 객관화에 있음.
 - 객관화라고 하여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독도문제를 이해
 -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발견한 세부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 자료인 Huth and Allee의 자료에 따르면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지배를 하는 대상국가(target)와 도전국가(challenger)의 관계에 오류가 있음.
 - 하나의 오류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대변하는 사례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오류의 근거에 일본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과민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도전국가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영토문제 관련 대응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

- 1919년부터 1995년까지 75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영토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양식이 명확하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는 주변국의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 바가 없었지만, 주변 강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은 주변국을 상대로 상당히 빈번한 협상과 군사적 대응을 실행해 왔으며 그 행위양식이 다분히 상호호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
 -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분쟁을 사실상 종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토문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탈냉전 이후에도 주변국가인 러시아, 중국, 한국을 대상으로 영유권 분쟁을 지속적으로 제기
 - 중국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영유권과 관련하여 주변국에 대한 도전의 사례가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지만 한국과 직접적인 분쟁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이익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주변국의 행위 양식을 확인하는 과정에 한국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협력의 파트너로 우선 고려해야 할 전략적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립
-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호적이며 타협의 여지가 많고 한국과 이익의 충돌이 없는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를 확대하여 중국과의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함.
 -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도전국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동의, 합의와 같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전략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외교전략
 - 일본은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대상국가의 지위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도전국가의 지위에서는 현상변경의 명분을 강조하는 이중전략을 채택
 - 일본의 국제법에 의존하는 현상변경전략과 실효적 지배에 의존하는 현상유지전략의 동시 활용이라는 이중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원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이른바 1국 1원칙의 규범을 확대·강화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호적이며
타협의 여지가 많고
한국과 이익의
충돌이 없는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를
확대하여 중국과의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함**

주석

- 1) 본 주장이 독도에 대하여 한국 측이 제시하는 지도와 역사서의 내용이 효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도 한국의 반응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 연구로 효과적이지만 국제적으로 기초조사에 근거한 독도의 영유권 확보라는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효한 접근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llee, Todd L. and Paul K. Huth, 2006, "Legitimizing Dispute Settlement: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s Domestic Political Cov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00, No.2, pp.219-234.
- Carter, David B., 2010, "The Strategy of Territori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4, No.4, pp.969-987.
- Hensel, Paul R., 2001,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5, No.1, pp.81-109.
- Hensel, Paul R. and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Thomas E. Sowers II, 2008, "Bones of Contention: Comparing Territorial, Maritime, and River Issu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2, No.1, pp.117-143.
- Huth, Paul K. and Allee, Todd L., 2003,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der, Toby J., 2009, "Understanding Arms Race Onset: Rivalry, Threat, and Territorial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s*, Vol.71, No.2, pp.693-703.
- Senese, Paul D., 2005, "Territory, Contiguity, and International Conflict: Assessing a New Joint Explan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9, No.4, pp.769-779.
- 김영수, 2008,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pp.113-130.
- 김자영, 2011,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안암법학』 34권, pp.1063-1108.
- 김태준, 2008,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78권, pp.189-219.
- 배진수, 2012, "세계영토분쟁의 흐름과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 『기독교사상』 통권 제646호, pp.34-46.
- 서상문, 2013,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손기섭, 2007,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권 3호. pp.447-470.

- 윤태룡, 2012,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
- 이극관, 2011,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영토법리의 비판—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사건(2002)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7권 1호, pp.1-27.
- 이동률 외,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세련, 2010,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1권, pp.231-253.
- 최병학, 2010,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4권 2호, pp.217-241.
- 최희식, 2010,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JPI정책포럼』 52권, pp.1-16.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낙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